

91.7.11

‘동성동본’ 통해본 결혼풍속

고려말부터 금혼...조선시대 ‘고배’

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간 금혼이 정착된 것은 고려 말기인 13세기 무렵부터이다.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동성으로 혼인한 자는 곤장 60대에 처하고 이혼하게 된다”는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인용해 동성동본 불혼제도가 도입됐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시대 들어서는 동성동본간 결혼이 더욱 엄격히 금지됐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결혼 범위는 매우 좁았다. 양반사회에서는 가문 사이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 따라 배우자를 구했으며, 더욱이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당

파 사이에서도 통혼을 피했다.

그러나 삼국시대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많았던 것을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신라의 혼인제도는 완전한 근친혼, 곧 내혼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신라 56대에 걸친 왕 중에서 같은 성과 결혼한 임금이 25명이고, 그 밖의 31명은 박·석·김씨가 서로 통혼했다.

이런 근친혼은 고려왕조에도 이어져 고려사를 통해 보면 왕실에서 63건의 동족혼이 있었다.

근친혼을 금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정종 이후로 1046년 정종은 대공친(4촌)을 맞아들여 낳은 자녀는 버슬

을 못하도록 했다.

또 1085년(선종 2년)에는 금혼 범위를 이복형제로 하고 그들 소생은 버슬을 못하게 하였으며, 1096년(숙종 1년)에는 금혼 범위를 소공친(6촌)으로 했다. 이때부터 근친혼은 차츰 자취를 감춰갔다.

한편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일부일처제였다고 한다. 삼국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다 사회가 점차 계층화되면서 상류사회에서 일부다처제가 성행했다. 조선시대에도 권세와 부를 지닌 상류계층에서는 일부일처다첩제가 관행이었다.

이런 혼인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얼마쯤 변화를 겪으면서도 존속되다 광복 이후 일부일처·자유연애 등에 바탕한 혼인제도가 정착됐다. 그러나 동성동본간 금혼은 격렬한 논쟁을 거쳐 법으로 자리잡게 됐다. 송현순 기자